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정지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 2012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병역명문가의 정의에서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의 현역복무를 포함하며, 현역의 정의를 확대함에 따라,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본 조례의 정의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변경(안 제1조)
 -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변경(안 제2조)

-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명칭변경(안 제5조)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 가족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 2012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병역명문가의 정의에서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의 현역복무를 포함하며, 현역의 정의를 확대함에 따라,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본 조례의 정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의 정의에서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의 현역복무도 포함

하고, 현역복무의 정의에서 상근예비역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병역
명문가 가족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